

제2679호
2019. 9. 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10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공 고

제2019-65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19-671호 : 도시관리계획(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및 지형도면 공람·공고 8
 제2019-673호 :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11
 제2019-676호 :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처리 공시송달 공고 1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0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인현동2가 181-58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8길 26-1	2019. 9. 4.	마른내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마른내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등·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58호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혁신교육 민관학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사업의 범위 (안 제1조 ~ 제4조)

-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 혁신교육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사업의 범위 지정

☐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지원(안 제5조, 제6조)

- 혁신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
- 혁신교육 사업 추진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운영협의회 등 민관학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7조)

- 혁신교육 운영위원회 및 실무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위원 임기 및 해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4884, FAX:339

6-8632, 메일:asy05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각 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취학연령기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5.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주민, 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하 “중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혁신교육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② 혁신교육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적용범위) 혁신교육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

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혁신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혁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지원계획(이하 “혁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혁신교육운영협의회 등

제7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중·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의원 1명
2.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초·중·고 학교장
3. 중구 관내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4.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운영협의회 회의 및 의사)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1인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구로 실무추진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중구 관내 초·중·고 교원
2. 중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3. 중구 관내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4. 각 분과의 분과장 및 대표
5. 교육 관련 전문가 및 단체원
6. 관내 교육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실무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5. 그 밖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⑤ 실무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실무추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구청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실무추진협의회에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추진협의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당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71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및 지형도면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3호(2005. 9. 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38호(2012. 9.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2호(2014. 9. 4)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2019. 9. 4.~2019. 9. 17.)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결정 취지

-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시설(소로(특) 3-187) 공공조성을 위해 일부구간(북창동88-1, 94-47) 공동개발 특별지정 해제 및 시행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2.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공동개발 면적(㎡)	위 치		필지면적 (㎡)	비 고	획지 (공동개발)계획	기공동 건축	동일 소유
기정	16	166.7	북창동	88-1	63.7	시설편입	공동개발 특별지정		○
			북창동	88-2	69.6	과소필지			
			북창동	94-41	33.4	과소필지			
	239.5	239.5	북창동	94-38	116.8	주변 과소필지	공동개발 특별지정	-	-
			북창동	94-48	45.0	과소필지		○	○
			북창동	94-47	77.7	시설편입			
변경	16	103.0	북창동	88-2	69.6	과소필지	공동개발지정		○
			북창동	94-41	33.4	과소필지			
		161.8	북창동	94-38	116.8	주변 과소필지	공동개발지정		
			북창동	94-48	45.0	과소필지			

나.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 전 공동개발	변경 후 공동개발	변경사유
16	• 공동개발 특별지정 지정 - 북창동 88-1⊕88-2⊕94.41	• 공동개발 지정 - 북창동 88-2⊕94-41	• 가구번호 16 북창동 88-1번지 63.7㎡, 북창동 94-47번지 77.7㎡는 소로 특 3-187에 따라 도로로 조성되며,

• 공동개발 특별지정 지정 - 북창동 94-38⊕94-48⊕94-47	• 공동개발 지정 - 북창동 94-38⊕94-48	• 건축 시 도로 조성토록 특별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과소필지 등의 사유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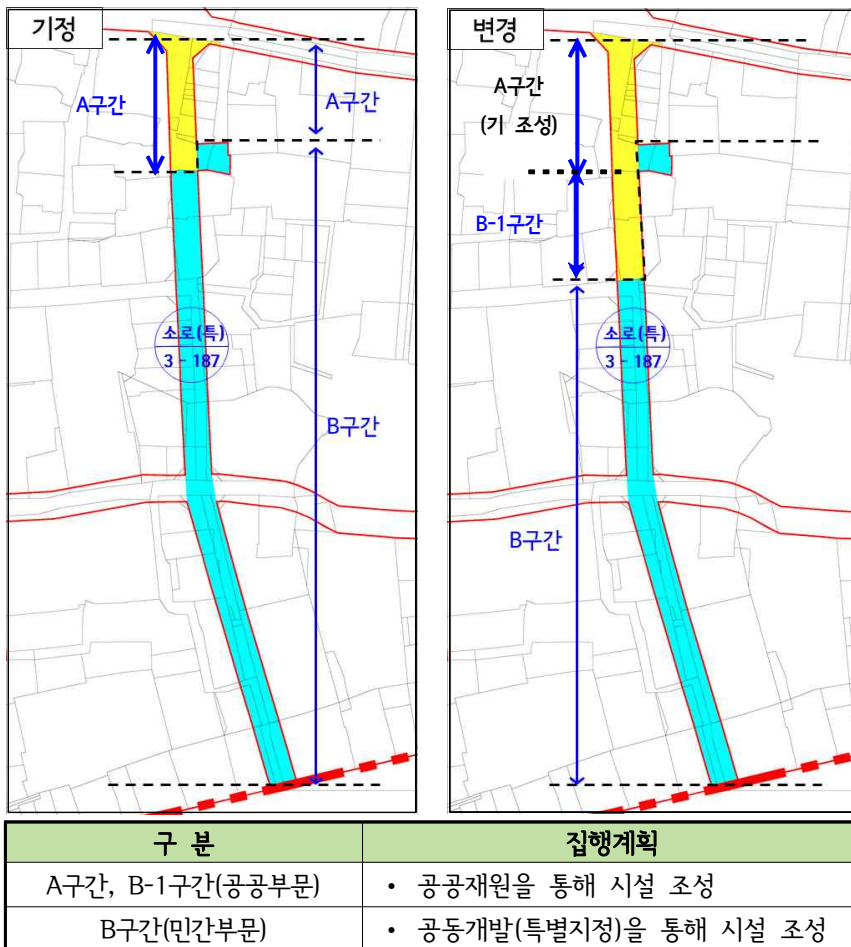
2)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가. 공공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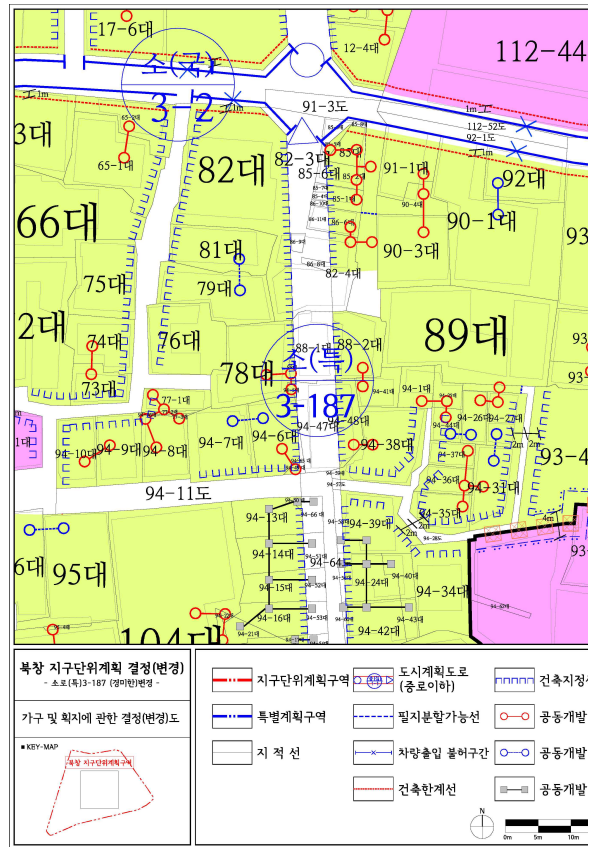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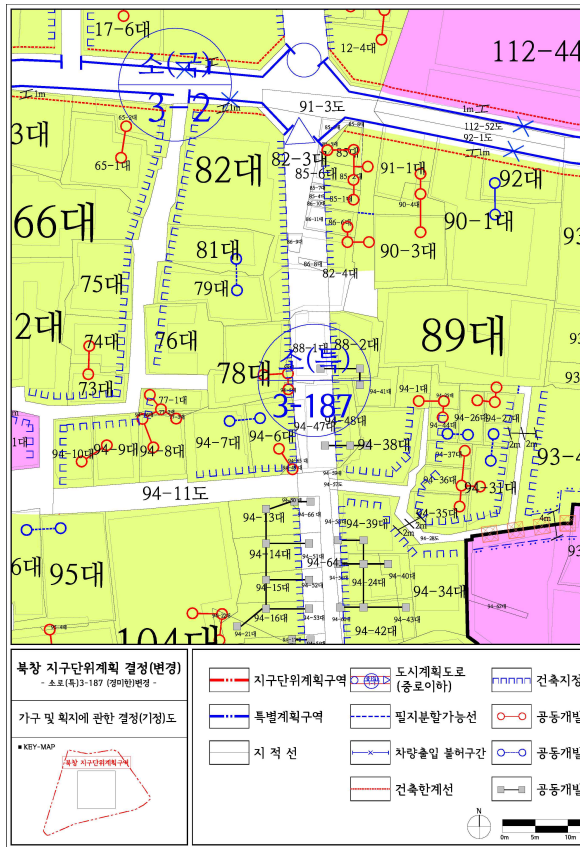
제1절 도로시설

제5조의 1 소로(특) 3-187 조성 및 집행계획(변경)

구 분	시 행 지 침
기정	① 서울시 중구 고시 제2013-93(2013.10.3.)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동일하게 A구간은 공공이 조성 및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① 소로 특3-187호선 B-1구간은 공공이 조성 및 집행 하는 것으로 한다.



■ 가구 및 획지 관한 결정(변경)도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증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7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2. 등록공인

가. 규 격 : 1.8cm × 1.8cm

나. 내 역

- 황학동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

다. 사용일자 : 2019. 8.

라. 사용용도 : 예산 집행 및 물품출납 시 사용

[붙임]

[별지 제1호서식]

표 면	
직인등록조서	
회 계 명 일 반 회 계	(인영)
관 서 명 중 구 황 학 동	
직 명 중 구 황 학 동 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	
사용개시일 2019년 9월 2일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이 면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2019년 8월 일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76호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처리 공시송달 공고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일본인 명의 건물등기 말소 대상 중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미신청분에 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및 건물멸실등기 촉탁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9. 9. 4. ~ 2019. 9. 19. (15일간)
2. 공고장소 : 서울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나. 당사자	성명(명칭)	**기업주식회사 외 30건
	주 소 (대장상주소)	미기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 불임 일제잔재청산 관련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내역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4. 유의 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제청산 관련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내역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일제잔재청산 관련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내역

연 번	말소대상 건물등기 내역							이동 후 지번	토지 소유자	비고
	등명	본번	부 번	관계 지번	등기내용	건물 소유자	고유 번호			
1	남창동	30		31-1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22평6홑5작3재 외2계평18평2홑 내와즙20평8홑 도단즙1평8홑5작3재	유본무웅	301247	남창동 30	**기업 주식 회사	
2	남창동	167	3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3평	지화유병위	305065	남창동 167-3	**기업 주식 회사	
3	남창동	168	4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0평2홑1작	선파윤일랑	305078	남창동 168-4	장*헌	
4	남창동	210	2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0평	선파윤일랑	305415	남창동 210-2	홍*수	
5	신당동	107	3		목조초즙평가건본가 건평5평6홑4작 부속 목조와즙평가건납옥 건평3평6홑	평강수성	270668	신당동 120-2 2	진*운	
6	신당동	107	3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5평	금희회원	270683	신당동 120-2 2	진*운	
7	신당동	107	3		목조초즙평가건본가 건평5평7홑 부속 목조초즙평가건물치 건평1평8홑2작2재	김택덕광	270689	신당동 120-2 2	진*운	
8	신당동	107	3		복조와급도단즙평가건본가 건평14평 내역와즙8평8홑9작 도단즙6평	고산정부	270691	신당동 120-2 2	진*운	
9	신당동	107	3		목조초즙평가건본가 건평6평6홑3작	산본쾌영	270692	신당동 120-2 2	진*운	

10	신당동	107	3		목조초층평가건본가 건평4평6홑2작5채	암본상정	270699	신당동 120-2 2	진*운	
11	오장동	44	6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 16평5홑 외2계평9평2홑5작	육보실광	313988	오장동 44-6	이*만	
12	오장동	44	6		목조초층평가건본가1동 건평7평2홑	구보실광	313989	오장동 44-6	이*만	
13	오장동	44	6		목조초층평가건본가1동 건평5평8홑3작	구보실광	313990	오장동 44-6	이*만	
14	을지로 3가	95	6		목조도단층평가건본가1동 건평10평5홑6작	산내적량	777019	을지로 3가 95-6	유*자	
15	을지로 3가	95	6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15평7홑3작	산내적량	777020	을지로 3가 95-6	유*자	
16	을지로 3가	95	6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14평9홑4작	산내적량	777021	을지로 3가 95-6	유*자	
17	을지로 4가	140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0평	원인안치	777674	을지로 4가 140-1	채*석	
18	인현동 1가	38			목조와즙도단층2계건 병원1동 건평11평 와즙7평7홑5작 외2계평7평	강원정차량	750577	인현동 1가 38-1	한*수	
19	인현동 1가	114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9평6홑3작5채	단야국송	750826	인현동 1가 114-1	문*민	
20	초동	19	10		부록크조와즙평가건 본가1동 건평8평	영본풍치량	557110	초동 19-10	송*근	
21	초동	19	10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17평 외2계평14평	영본풍치량	557111	초동 19-10	송*근	
22	충무로	51	3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북촌용지조	552548	충무로	문*주	

	2가				건평17평7홉5작 외2계평14평			2가 51-3		
23	충무로 2가	53	8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24평4홉9작 외2계평18평9홉	중전공개	552612	충무로 2가 53-8	조*광	
24	충무로 2가	53	8		목조와급도단즙2계건본가1동 건평18평6홉5작5재 내도단즙3평3홉5작5재 외2계평17평1홉6작	야구임치랑	552613	충무로 2가 53-8	조*광	
25	충무로 2가	53	8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 15평4홉5작 외2계평13평5홉	야구임치랑	552614	충무로 2가 53-8	조*광	
26	충무로 2가	53	8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15평2홉	전천용장	552615	충무로 2가 53-8	조*광	
27	남창동	46	12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6평4홉7작	원등축의	303236	남창동 46-12	김*수	
28	봉래동 1가	101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9평8홉4작5재	암전남태랑	294495	봉래동 1가10 1	**산업 주식 회사	
29	북창동	11	7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9평8홉	용천록남	793430	북창동 11-7	김*태	
30	북창동	20	6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22평4홉2작 외2계평21평3홉2작	송본구서	793504	북창동 20-6	**상사 주식 회사	
31	을지로 5가	84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12평7홉 외2계평6평	복전우신	781081	을지로 5가 84-1	**신탁 주식 회사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